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박수연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8178호

시행일자 2018. 10. 5.

수 신 각 시도지사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

1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7호(2018.9.27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11호(2018.9.27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71호, 2017.9.26.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7호, 2018.9.27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및 정정한바, 이를 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<고시 2018-207호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>
가. 주요내용 :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

나. 시행일 : 2018.10.1부터(일부항목 2018.9.28부터)

<고시 2018-211호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정정>

가. 주요내용 :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산정코드 정정

나. 시행일 : 2018.9.28부터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